

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
직장맘·대디의
노동권 및 모·부성 권리를 보호하고
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
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직장맘·대디의 고충에 대한 전문가 종합상담

- 모·부성보호제도 등 노동법률 상담 : 공인노무사
- 직장맘·대디 심리정서 상담 : 심리상담전문가
- 임신 중이거나 출산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직장맘·대디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

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

- 사업장의 모·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사업장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: 모·부성보호제도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검토 등

직장맘·대디 역량강화교육

- 직장맘·대디가 알아야 할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 노동 법률교육
- 일·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온·오프라인 역량강화교육

직장맘·대디 노동환경 개선

- 모·부성보호제도 및 자치구 조례 재·개정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
- 일·생활균형캠페인 : 직장맘·대디의 위라벨을 위한 모·부성보호 정책 홍보

직장맘·대디의
직장 내 고충, 가족·개인 고충, 노동 등을
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
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공인노무사 무료상담
02-335-0101

상담시간

평일 10:00 ~ 17:00

[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]



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
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(건대입구역 6번출구)

상담전화 02-335-0101 대표전화 02-332-7171

FAX 02-335-1070

인스타그램 @sdworkingmom2021

유튜브 @workingmomcenter

이메일상담 workingmom@hanmail.net

카카오톡 검색창에 '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' 입력

홈페이지 www.workingmom.or.kr

직장맘·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·부성보호제도

안 내 서





한 눈에 보는 모·부생보호 및 일·생활 균형 지원제도

임신-출산-육아-가족돌봄

직장맘·대디를 위한



임신

난임치료휴가

- » 연 3일, 최초 1일 유급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*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- »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
- » 최대 일 2시간 유급 단축
- » 근로기준법 제74조

태아검진 시간의 허용

- »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 검진
- »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
- » 근로기준법 제74조의2



직장맘·대디를 위한



출산

출산전후휴가

- » 90일(다태아 120일)
- » 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보장
- »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 통상임금 100%
- » 추후 30일(다태아 45일)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
- » 근로기준법 제74조,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

배우자 출산휴가

- » 10일(유급)
- »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

유산·사산휴가

- »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
- » 최초60일(다태아 75일) 통상임금 100%
- » 추후 30일(다태아 45일)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지급
- » 근로기준법 제74조,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

직장맘·대디를 위한



육아

수유시간

- » 생후 1년 미만 유아
- » 일 30분, 2회, 유급
- » 근로기준법 제75조

육아휴직

- » 임신 중인 경우
- »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
- »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» 육아휴직 급여 지급
- » 자녀별 최대 1년, 2회 분할가능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- »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
- » 자녀별 최대2년 (1년+육아휴직미사용기간)
- » 주 15~35시간 근무로 단축
- 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

직장맘·대디를 위한



가족돌봄

가족돌봄휴직

- »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
- » 연간 최장 90일, 1회 30일 이상 사용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

가족돌봄휴가

- »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
- » 연간 최장 10일, 1일 단위 사용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

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

- » 가족돌봄, 근로자 본인 돌봄, 55세이상 은퇴준비, 학업
- » 1년(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)
- » 주 15~30시간 근무로 단축
- »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

*남녀고용평등법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: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
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

업무분담지원금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 지원되는 지원금